#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84

발의연월일: 2021. 8. 24.

발 의 자:양정숙・김홍걸・안호영

이상헌 · 오영훈 · 이용빈

황운하 • 이규민 • 서영교

남인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대신 개인정보 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수능 수험표를 보고 수험생에게 연락하는 수능 감독관과 청소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파악한 개인정보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동 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단 자'란 조문으로 법적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용주가 아닌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 취급자라 판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금지행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 2조제9호 신설 및 제28조제1항 등).

####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용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중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 중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훼손"을 "이용, 훼손" 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고용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u>을 말한다.</u>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감독) ① <u>개</u>
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	<u>인정보취급자</u>
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u>임직원,</u> 파견근로자, 시	
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금지행위) <u>개인정보</u> 를 처	제59조(금지행위) <u>개인정보처리자</u>
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	와 개인정보취급자 중 개인정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보</u>
   하는 해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	3
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u>훼손</u> , 멸실,	이용,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	
위	